

시험부정행위처벌 규정

제정 : 1997. 03. 01.

개정 : 2015. 02. 06.

담당 : 교학팀(950-5406)

----- 목 차 -----

|| 제1조(목적)

|| 제2조(처벌)

|| 제3조(처벌절차)

제1조(목적)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한국성서대학교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응시하는 학생이 부정행위를 했을 때 이를 처벌하는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(개정15.02.06)

제2조(처벌) 시험에 부정행위를 한 자는 아래의 구분에 의하여 처벌한다.

1. 대리시험 및 시험답안지를 바꾸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와 대리자 모두를 그 학기 학점을 몰수하고 무기정학에 처한다.
2. 부정행위자 및 계획자는 그 과목 몰수 및 해당 학기 수강 신청한 과목 중 1개 학과목의 학점을 무효에 처한다.
3. 시험 태도 불량자는 그 교과목 학점 몰수와 근신에 처한다.
4. 재범자는 퇴학처리를 원칙으로 한다.

제3조(처벌절차) 이 내규에 의한 처벌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아 총장이 시행한다.

1. 제2조 1과 2와 4의 경우는 장학 및 학생복지·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벌한다.
2. 제2조 3의 경우는 시험 감독교수의 증언과 증거물로 처벌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칙은 1997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칙은 2008년 06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5년 02월 06일부터 시행한다.